

2026년도 제1회 공무직근로자(보호경비원)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

2026년도 제1회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(보호경비원)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3일
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

I 추가합격자

연 번	채용분야	응시번호	성 명
1	공무직근로자(보호경비원)	260-110	손 * 미

※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로 인해 채용공고 시 선발한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.

II 채용후보자 등록

○ 대 상 : 2026년도 제1회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
(보호경비원)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1명

○ 기 간 : 2026. 7. 13.(월) ~ 7. 17.(금), 09:00 ~ 18:00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

○ 장 소 :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(별관) 7층 총무팀 (☎051-461-3192,3196)

※ 주소 : (48939)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7, 교보생명빌딩 7층

○ 등록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○ 제출서류

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(붙임1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(붙임2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3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(붙임4)
- 공정채용확인서 1부(붙임5)
- 기본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표출) 1부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주민등록번호 표출) 각 1부
-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(영수증<진료비 계산서 등> 첨부 함께 제출)
 - ※ 채용합격자 발표일 이후 검사, 사진부착
 - ※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- 사진(반명합판 3cmX4cm) 2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최종학력(재학 · 휴학 · 제적) 증명서 1부
 - ※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도 가능

○ 유의사항

-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신원조사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
-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출입국 · 외국인청 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51-461-3192)

【붙임1】 [별지 제21호서식]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	
주 소							
실거주지	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대 폰 : E-mail :	
학 력	학 교 명	기 간		전 공 학 과	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경 력	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명	기 간		직 책(직급)		상 별 관 계(일자)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기 간		거주 목적		동반 가족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병역	군 별	기 간		병 과	최종 계급	미 필 사 유	
		. . ~ . .					
배우자 부모 자녀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
	배우자			子女			
	父			子女			
	母			子女	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작 성 자 성명				년 월 일 인(서명 또는 날인)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, 동반가족 등 포함), 병역사항, 가족관계(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**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**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[]

동의하지 않음 []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민감정보 처리**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**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 []

동의하지 않음 []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]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

연락처:

<유의사항>

- ①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신원진술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.
- ③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단, “서명 또는 날인”은 2부 모두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,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“해당사항 없음”이라고 기재합니다.

【 작성방법 】

- ☐ 성명, ☐ 주민등록번호, ☐ 등록기준지, ☐ 주민등록지, ☐ 실거주지
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 -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.
 -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
- ☐ 직장명 및 소재지 :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- ☐ 연락처 :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, e-mail을 기재합니다.
- ☐ 학력
 - 본인의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.
 - 학교명 :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,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기간 : 입학년월일,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·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 - 전공학과
 - 학위 :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 - 소재지 :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. (동·면단위까지 적습니다.)
- ☐ 경력
 - 본인의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.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.
 -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·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.

○ 해당사항이 없으면 ‘해당 없음’에 체크합니다.

☐ 해외거주사실

여행 목적이 아닌 해외거주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.

☐ 병역관계

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.

○ 군별, 병과, 최종계급,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.

○ 미필사유 : 제2국민역, 병역면제, 연령미달, 입영연기중,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.

☐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

배우자, 부모, 본인의 자녀를 기재합니다.

○ 기재 순서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순으로 기재합니다.

☐ 기타 작성 시 주의사항

신원진술서 상의 하단의 ‘서명’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‘서명(3곳)’의 서명은 반드시 모두 같아야 합니다.

【붙임2】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■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	
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	
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	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동의

성명	생년월일	서명	
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		자필 서명	자필 서명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

개인정보	민감정보
■ 주민 조회자료(경찰청)	■ 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경찰청, 지방경찰청, 경찰서, 법무부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주민등록표 등·초본		
2	기본사항 증명서		
3			
4			
5	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☐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 -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 시행 2026년 제1회 공무원직근로자(보호경비원)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>

1. 피 성년 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6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

【붙임5】

공정채용 확인서

(응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

성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☐	☐
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☐	☐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☐	☐
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소속기관 :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명

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- 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법무부 부산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